

## 유초은행과 거래하시는 외국인 고객님 안내사항

■ 계좌 개설 및 각종 수속 시 국적, 재류자격, 재류기간 등의 확인을 위한 재류카드를 직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재류카드를 갱신한 경우, 수속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외교관 등 재류카드를 교부받지 않은 분은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.

■ 재류기간 만료일이 계좌 개설 신청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.

계속 재류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재류기간 갱신 후 새로운 재류카드를 가지고 계좌 개설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입국 시 결정된 재류기간이 3 개월 이하이고 재류카드를 교부받지 않은 분은 유초은행 및 우체국에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.

※ 재류자격 및 재류기간 갱신 수속 중인 분은 갱신 후 새로운 재류카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
■ 학생증이나 사원증 등을 제시해 주십시오.

재류자격이 ‘留学(유학)’, ‘技能実習(기능실습)’인 분은 통학 중 또는 근무 중임을 확인하기 위해 재류카드와 함께 학생증이나 사원증 등을 직원에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.

※ 학교나 회사에 유초은행 및 우체국에서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■ 계좌 개설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

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각종 확인을 위해 접수 당일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고 추후 통장을 고객의 자택으로 우편 발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또한, 경우에 따라서는 계좌 개설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■ 기타 주의해야 할 사항

• 제출하신 증명 서류는 사본을 받아 보관합니다.

• 주소나 이름이 변경되어 재류카드를 갱신하신 경우, 즉시 갱신된 재류카드를 지참하고 창구에서 수속을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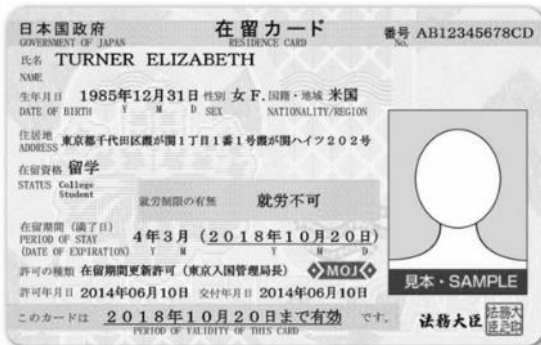
• 신고가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• 비거주자 신고를 하신 분 중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, 즉시 창구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• 귀국 시나 일본 국외로 이사 시에는 반드시 계좌를 해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•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계좌(통장, 현금카드)를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.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.

앞면



뒷면



출처: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